

## **제 2 주제 “Identrus를 통한 전자무역 결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Identrus를 통한 電子式 貿易決濟의 活性化에 관한 研究

吳元奭 (성균관대학교)  
安秉壽 (서울디지털대학교)

## 目 次

### I. 序論

### II. 電子式 貿易決濟의 類型과 限界

1. 電子式 貿易決濟의 出現
2. 電子式 貿易決濟의 類型
3. 電子式 貿易決濟의 限界

### III. Identrus의 概念과 運用上의 特徵

1. Identrus의 概念
2. Identrus의 運用節次
3. Identrus의 特徵

### IV. Identrus를 통한 電子式 貿易決濟의 活性化 可能性

1. 費用節減 可能性
2. 時間短縮 可能性
3. 危險低減 可能性
4. 效率性 提高 可能性

### V. 結論

## I. 序論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무역거래의 구현방법도 급속히 전자화되고 있다. 특히 무역거래를 계약중심으로 볼 때, 계약의 체결전 과정 이른바 무역마케팅과정은 e-마켓플레이스라는 형태의 사이버공간을 통해 오픈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예비 거래선과의 접촉에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자화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으며, 특히 무역결제에 있어서는 전자화의 정도가 가장 뒤늦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무역결제분야의 전자화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무역결제가 여러 나라에 걸쳐 다수의 관련 당사자가 개재되는 특성이 있어 이 당사자 전원이 전자화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거액의 자금이 이전되는 거래를 전자무역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실행할 때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관리방안의 부재와 문제발생시의 해결방안이 간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즉, 이미 출현한지 수년이 경과한 TradeCard의 경우, 은행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만으로 결제와 거래이행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대한 무역업계의 신뢰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sup>1)</sup> 그 개념이 소개된 BOLEIRO의 SURF의 경우, 기존의 신용장거래 혹은 추심거래를 단지 전자화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에 설립된 Identrus는 전통적인 무역결제방식인 신용장방식 혹은 추심방식 등에서 수행되는 제반 기능을 유사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거래의 특성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처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국내 일부 금융기관들에 의해 도입되어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Identrus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 존재의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dentrus의 운용절차와 기능상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식 무역결제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전자화

---

1) 2000년 SIBOS(SWIFT Interbank Operations Seminar)에서 처음 소개됨

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무역관습의 정착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Identrus가 출현하기 이전의 전자식 무역결제 방법들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Identrus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고찰코져 한다. 이어서 Identrus의 운용절차와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전자식 무역결제의 활성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Identrus는 그 기본적 역할이 디지털 서명의 인증 기관이므로 부득이 디지털 서명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외에는, 가급적 상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각종 문헌 및 국제규칙과 각국의 법률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도구로 삼아 연구하는 문헌 중심의 연구방법을택하고자 한다.

## II. 電子式 貿易決濟의 類型과 限界

### 1. 電子式 貿易決濟의 出現

전자식 무역결제란 법적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생성된 용어가 아니라 무역 실무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출현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多義的이고 한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支給(payment)은 경제 주체 상호간 채권·채무의 해소를 위하여 지급수단을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決濟(settlement)는 대금 지급의 과정(process of making payment)을 의미한다는 견해<sup>2)</sup>도 있다. 또 은행 업계에서는 외국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여 전자식 무역결제에 대하여 “외국에 존재하는 무역거래의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채권채무를 관련 당사자가 통신망에 접속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기를 이용하여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여 의미를 한정하고자 한다.

위 정의에 따른다면, 현재 신용장 거래 등에서 은행들이 활용하고 있는 SWIFT망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은 전자식 무역결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련 당사자중 은행만이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무역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통신망에 접속된 컴퓨터를 통하여 전자메시지를 주

2) Ronald A. Anderson & Walter A. Kumpf, *Business Law*, 6th ed.,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61, pp. 628~629

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결제만을 “전자식 무역결제”라고 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식 무역결제가 출현하게된 것은 신용장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무역결제 방식이 오늘날의 무역환경에 비추어 진부해졌기 때문이다. 즉,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의 컨테이너 혁명이라 불리우는 운송속도의 향상과 1990년대 들어 급속화된 정보통신의 발전은 종이서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역거래 과정을 불편하고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EDI 등을 통한 무역거래의 전자화 움직임이 업계에서 나타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화 노력<sup>3)</sup>도 이루어졌다.

전자식 무역결제는 이러한 무역거래의 전자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당초에는 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종이 서류를 전자메시지로 대체하여 이를 기존의 결제관련 업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뒤이어 단순히 서류만의 전자화가 아니라 거래 과정 자체의 전자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 2. 電子式 貿易決濟의 類型

종이서류로 운영되는 업무방식을 전자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實際的 接近方法(substantial approach)」이라 불리며 기존의 모든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업무체계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 나타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機能的 接近方法(functional approach)」으로 불리며 이는 컴퓨터를 도입함으로써 필요없게 되거나 혹은 중복되는 업무절차를 생략하고 효율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전자식 무역결제도 당초에는 실제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법적·제도적 문제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법적·제도적 문제들이 해결 내지는 완화되어 기능적 접근방법의 도입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BOLERO의 SURF<sup>4)</sup>를 들 수 있다. 우

3)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더라도 무역거래조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1990년의 “Incoterms”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인도의 증거 또는 운송서류와 동등한 전자적 통신문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고, 운송과 관련해서는 동년에 CMI에서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결제와 관련해서는 1993년에는 “UCP 500”에서 전자적 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완화한 바 있으며, 2002년 4월에는 신용장 거래에서 전자적 제시에 적용할 보칙으로 “eUCP”가 발효된 바 있다.

선 BOELRO는 전자메시지의 안전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메시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하여 표방하고 있으며, SURF는 이러한 BOLERO의 기능을 토대로 하여 기존의 종이서류로 이루어 지던 무역거래과정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전자메시지로 대체함에 역점을 두 었다. 이 과정에서 종이서류가 전자메시지로 대체됨에 따라 은행원의 육안에 의존하던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판정기능을 컴퓨터에 의해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결국은 은행의 역할을 전자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전자식 무역결제는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져 정착된 기존의 무역관습 또는 법규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면과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적다는 면에서 저항감 없이 실무계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전자화를 통하여 추구하게 되는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의 제고 등에 있어서는 기존 기능의 생략과 통합 등을 통한 극대화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안게 된다.

기능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TradeCard<sup>5)</sup>를 들 수 있다. TradeCard는 전자화된 무역환경에서 전통적인 신용장이 안고 있는 높은 수수료의 문제, 서류인도와 대금지급의 지연 등을 비판하면서 이를 대신하는 전자식 무역결제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 운용상의 특징은 기존의 신용장 거래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역할이 바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수행하던 제시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심사를 TradeCard의 컴퓨터 시스템인 “SA ; System Administrator”가 수행하게 되며, 은행은 단지 수출입 당사자의 대금인출 및 입금과 관련된 기능과 일부 신용공여기능을 수행하게 될 뿐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은행업계는 TradeCard의 확산에 우호적이지 않으며, 또한 관련 당사자 전원이 TradeCard의 회원일 때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상업적 정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 4) SURF는 Settlement Utility for managing Risk and Finance의 줄인 말로, 무역 거래에서 종전의 종이서류로 이루어지던 과정을 전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한 BOLERO의 부가가치서비스이다. 즉, 전자적인 환경에서 무역결제를 가능케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이를 통하여 구현가능한 결제서비스는 화환신용장, 화환추심 및 open account 등이다. SURF에 대하여는 채진익, BOLERO 시스템상 SURF의 운용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2.
  - 5 ; <http://www.bolero.net/decision/service/surf/index.php3> 등 참조
  - 5) TradeCard에 대하여는 안병수, 국제결제상 TradeCard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II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11 참조

### 3. 電子式 貿易決濟의 限界

앞서 언급한 두 유형의 전자식 무역결제는 모두 기존의 무역결제방법을 보완 또는 개선하여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효용과 이익을 제공할 것을 목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완전한 실용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1) 法制的 問題

이제까지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법제는 종이서류를 토대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즉, 이제까지는 종이서류 중심의 商慣行에서 비롯된 각종법규와 제도가 당사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제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무역 환경은 급속히 전자화되고, 이러한 전자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나 제도의 제정 노력이 전자거래 경험보다 선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험에 선행하는 법제는 불공평하고 부적절한 법률규정이 되기 쉬워, 전자거래의 발전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sup>6)</sup>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식 무역결제의 경우에도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기까지는 법제의 마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전자식 무역결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국제적인 법제화 노력의 산물로는 UN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한 1996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과 2001년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법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이 있으며,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02년 4월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 보칙 ;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eUCP”를 발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자적 무역결제의 법제환경은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 등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sup>7)</sup>이 시도되는 등 법제 문제의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여

6) 朝岡良平, 國際商務論の諸問題, 同文館, 1998. p. 125.

7) BOLERO의 Rule Book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일 전자무역

지는 실정이다.

### (2) 去來의 安全性 問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이다. 즉, 일반적인 거래데이터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이외의 임의의 제3자가 몰래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sup>8)</sup>, 나아가서는 본인으로 가장하여 거래에 응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전자서명을 통한 인증기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국제사회 및 각국은 다양한 입법<sup>9)</sup>을 하고 있다.

전자서명을 통한 인증이란 기능적으로는 진정성, 무결성, 부인거부, 기밀성 등을 갖추면 충분한 것이며 국내에서도 전자서명법에 근거하여 수 개의 공인인증 기관과 인터넷 뱅킹 등을 위한 사설 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무역거래에서 통용되기 위한 전자서명은 위의 기능에 더하여 국제적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기록을 해외에서 수신하였을 때 이를 통하여 송신자의 진정성 확인과 전자기록의 무결성, 부인거부, 기밀성 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에서 운용되는 전자서명은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어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활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자서명의 존재는 특히 거액의 자금이 거래되는 전자식 무역결제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면서도 이제까지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다.

### (3) 代金支給 및 去來履行의 保證 問題

무역결제의 대표적인 형태인 신용장방식과 추심 방식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비교되는 요소가 지금 확약의 유무이다. 즉,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대금지급의 최종적인 약속을 해준다는 점이 수익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거래에 응하게 하는 최대의 유인요소가 되는 것이다.

---

시범 사업에서도 양국의 실정법내에서는 전자식 선화증권의 구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Rule Book을 제정키로 하였다.

8)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2000, p. 153

9) 최준선,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5권, 2001.2, pp. 214~215

물론 이러한 지급확약은 수의자가 거래를 이행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시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개설의뢰인이 의도하는 수의자의 거래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장치인 것이다.

전자식 무역결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금지급 및 거래이행의 보증이 이루어져야 신용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BOLERO의 SURF는 신용장 거래나 추심거래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TradeCard의 경우는 제휴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이행의 보증에 있어서는 제시된 전자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자식 무역결제에 있어서는 대금지급과 거래이행의 보증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4) 當事者間 利害關係의 問題

전자식 무역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무역결제방법에 비하여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 비용과 시간 면에서 이익을 주어야 한다. 즉, 전자식 무역결제에 관련된 당사자별로 손해가 줄어들거나 혹은 손해를 능가하는 이익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전자식 무역결제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없이는 모든 무역거래 당사자가 전자식 무역거래에 동참하기는 어렵다. 무역거래의 당사자별로 전자식 무역결제방법에 있어서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첫째, 수출업자의 입장이다. 수출업자가 전자식 무역결제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거래시간의 단축과 고객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금지급의 확약이 요청되며, 수입상 및 관련 당사자의 동참이 요구된다. 아울러 거래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자식 무역결제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된다.

둘째, 수입업자의 입장이다. 수입업자가 전자식 무역결제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거래시간의 단축을 통한 빠른 인도이다. 특히, 전자식 선화증권을 활용하는 경우 목적물품의 인도에 시·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전매를 할 계획이 없거나 최종 소비자인 경우, 이러한 이점은 상당부분 희석된다. 또 항공운송이나 해상화물 운송장이 활용되는 경우 인도의 속

10) 안병수, 국제결제관습상 TradeCard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2호, 2000.11.25, p. 13. ; [www.BOLEROltd.com/whatis/sectorbenefits.htm](http://www.BOLEROltd.com/whatis/sectorbenefits.htm)

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점이 없다. 아울러 거래이행의 보증이 명확치 못하다는 단점이 남는다.

셋째, 은행의 입장이다. 은행은 서류취급과 관련된 비용과 위험의 감소 및 서류 점검의 자동화를 통해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식 무역결제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서류작업과의 병행이 불가피하다.

요컨대,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식 무역결제의 주요 당사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노출되며 자신에게 불리한 변화를 수용할만한 강제력과 유인요소가 없는 한 전자식 무역결제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 (5) 네트워크의 外部性 問題

1980년 밥 메컬프(Bob Metcalfe)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말로 네트워크의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설명했다. 즉, 실세계에서는 10명의 회원에 1명이 늘면 10% 증가이지만 네트워크에서의 효과는 11의 제곱인 121이 되어 10의 제곱 100보다 21%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0명이 연결된 네트워크와 100명이 연결된 네트워크는 가치면에서 10배를 훨씬 넘는 차이가 존재하게 되며, 그 차이는 사용자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이용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참가자의 규모가 어느 한계점을 넘을 때까지는 보급이 자연되다가 그 한계점을 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급된다고 하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전자식 무역결제는 관련 당사자가 모두 개방형 네트워크에 참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일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 참가할 때까지 자신의 참가를 유보하게 된다. 즉,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넘을 때까지는 보급이 자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업분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무상 또는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는 예<sup>11)</sup>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볼 때 기존에 출현한 전자식 무역결제 방법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자 확대에 필요한 한계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11) 국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자의 증대를 위해 통신회사에서 고가의 단말기를 무상 또는 염가에 공급한 사례가 있다.

### III. Identrus의 概念과 運用上의 特徵

#### 1. Identrus의 概念

##### (1) Identrus의 設立 背景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식 무역결제에 있어서는 종이서류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결제와는 달리 실시간 불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의 신원과 신용에 대한 확신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문제가 있다. 종이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무역결제에서는 주로 은행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전자식 무역결제에 있어서는 이를 해결할 적절한 방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세계 유수의 몇몇 은행<sup>12)</sup>이 1997년 11월에 “Identrus”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1999년 4월 12일에 “Identrus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이하 Identrus라 칭함”의 설립을 공표 했다.

Identrus의 설립 당시 이미 전자식 무역결제와 관련하여 은행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SWIFT나 BOLERO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은행들이 새로운 전자식 무역결제 관련 조직을 설립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 때문이라 생각된다.

첫째, SWIFT는 비영리조직이며, 전세계 7천개 이상의 은행들이 메시지 교환량에 따른 지분을 갖는 구조이므로, 영리추구기회가 극히 적다는 점이다. 즉, 국제 무역결제에 있어 신용장이나 추심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은행간에만 폐쇄적으로 운용되는 SWIFT를 통하여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나름대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SWIFT가 일반 기업에까지 공개되도록 결정되었으므로<sup>13)</sup> 무역결제와 관련된 은행의 수익기회 감소를 우려하여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BOLERO는 기본적으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메시지의 안전한 송수신을 보장하는 메시징 플랫폼 및 선화증권의 권리이전을 위한 등록 시스템으로서

12) 최초 설립에 참여한 은행은 ABN AMRO, Bank of America, Bankers Trust, Barclays, Chase Manhattan, Citigroup, Deutsche Bank, Hypo Vereinsbank이다.

13) SWIFT는 SWIFTNet이라는 명칭의 서비스를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 초부터 공개한다. [http://www.swift.com/index.cfm?item\\_id=41584](http://www.swift.com/index.cfm?item_id=41584)

기능하며, 확산속도가 지연되고 있어 은행의 수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 무역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간 거래에서는 자체신용을 바탕으로 추심이나 open account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립배경에 따라 Identrus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신원확인 서비스와 계약체결후 대금결제 및 거래이행의 보증을 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적 무역결제 시스템으로 출현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 (2) Identrus의 展開와 現況

Identrus에는 무디스 평가 신용등급기준 BBB+이상의 세계적 은행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2002년 11월 현재 50개의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sup>14)</sup> 이를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130개국이상 100만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Identrus 가입은행의 첫 번째 기능은 전자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인증해주는 일이며 이를 위해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 CA)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Identrus Level-1의 인증기관이 되기 위한 가입비용은 10만불이며, 인증건수를 기준으로 연간사용료를 별도로 납부도록 하고 있다.<sup>15)</sup> 이 Level-1 인증기관은 사실상 모든 개별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확인뿐만 아니라 계약에 대한 지급과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하부에 등록기관(Registry Authority ; RA)을 거느릴 수 있는 등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 PKI)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내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내 수출입금융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외환, 조홍, 한빛 3개 은행이 컨소시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1년 6월 Level-1 CA로 가입이 되었다.

Identrus는 국내 은행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가입 자격에 관한 정책을 일부 변경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01년 12월 개정된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전자서명 이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공인전자서명만의 효력인정에 비하여 개선된 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인인증제에서 사설전자서명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될 수 있어 추

14) <http://www.identrus.com/fi/partner-list.xml>

15) <http://www.fntimes.com>; <http://www.logis-net.co.kr/gisa/200106/010622-5.htm>

가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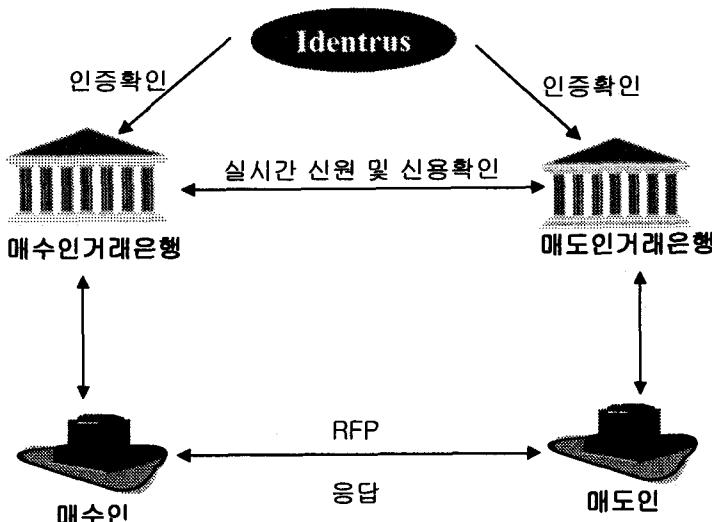
## 2. Identrus의 運用節次

Identrus라는 명칭은 두 가지 개념에서 출발한다. 먼저 앞부분의 "iden"은 신원을 의미하는 "identity"에서, 그리고 뒷부분의 "trus"는 신용을 의미하는 "trust"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명칭 자체에서 Idnetrus가 목적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원확인 및 거래에 대한 신뢰확보를 주된 특징으로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1) 當事者間 身元 確認

전자거래의 당사자간 신원 확인 방법으로는 현재 공개키기반구조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Identrus는 바로 이 PKI에 있어서의 최상위 인증기관(Root Certificate Authority ; RCA)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Level-1 가입은행은 인증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타 은행은 가입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등록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원 확인을 중심으로 하여 Identrus의 등록기관을 통해 가입은행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인증서를 받은 기업간의 전자거래절차를 도시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Identrus시스템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sup>16)</sup>

-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RFP(Request For Proposal)를 송신하며 이때 Identrus 가입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글로벌 ID(PKI기반의 전자서명)를 첨부한다.
- ② 매도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매매상대방인 매수인의 글로벌 ID의 유효성 확인을 요청한다.
- ③ 매도인의 거래은행은 매수인의 거래은행과 접촉한다.
- ④ 매수인의 거래은행은 자신의 고객인 매수인의 ID를 확인한다.
- ⑤ Identrus는 거래절차의 일부로써 매매당사자 각자의 거래금융기관의 ID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Identrus는 자신의 인증확인에 대하여 보증(Warranty)을 한다.
- ⑥ Identrus가 부여한 글로벌 ID에 대한 확인이 끝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응답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른 전자서명의 인증절차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인증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은행이라는 점이다.

## (2) 去來에 대한 信賴 確保

거래 당사자에 대한 신원 확인은 Identrus가 갖는 기능의 일부일 뿐이며, Identrus의 진정한 장점이자 특징은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과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에 있다. 이러한 보증기능은 계층적인 보증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즉, Identrus의 가입은행들은 각 은행별로 일정액의 보증한도를 책정받게 되며 이 보증한도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Identrus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한다. 가입은행들은 자신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보증한도를 분할하여 배분하며 기업들에게 보증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한다. 이러한 보증한도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후 다시 회전되는 (revolving) 형태이다. 따라서 가입은행은 철저한 신용조사를 거친 후에만 기업에게 글로벌 ID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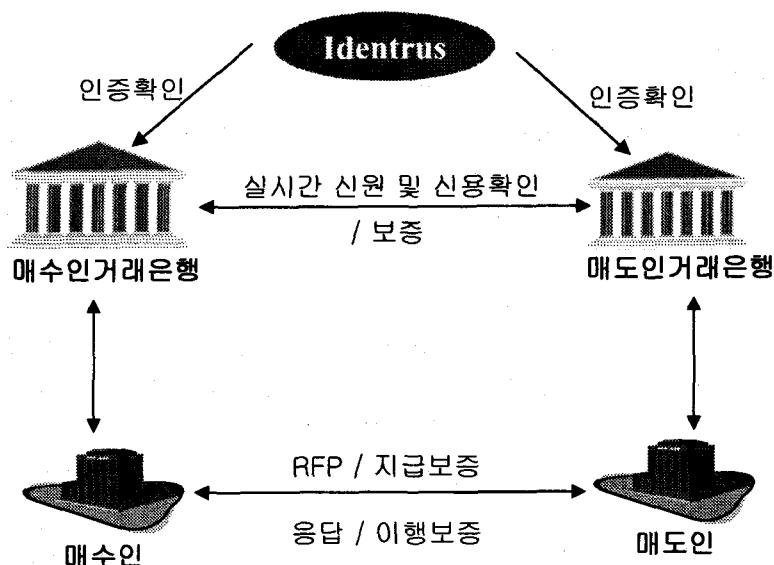
이상의 설명에 근거한 거래를 도시하면 <그림 2>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전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한도(대금지급)를 책정받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RFP(Request For Proposal)와 거래이행보증 요청을 송신하며 이때 Identrus로부터 부여받은 글로벌 ID를 첨부한다.

---

16) [www.identrus.com/story\\_03.xml](http://www.identrus.com/story_03.xml)

- ② 역시 사전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한도(거래이행)를 책정받은 매도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매매상대방인 매수인이 Identrus로부터 부여받은 글로벌 ID의 유효성확인과 대금지급보증을 확인 요청한다.
- ③ 매도인의 거래은행은 매도인의 거래이행 한도를 확인한 후 매수인의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매도인의 거래이행보증을 확인해주고 반대로 매수인의 신원확인 및 대금지급 보증을 요청한다.
- ④ 매수인의 거래은행은 자신의 고객인 매수인의 ID를 확인한다. 아울러 대금지급보증 한도를 확인한 후 지급보증여부를 통보한다.
- ⑤ Identrus는 거래절차의 일부로써 매매당사자 각자의 거래은행의 ID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Identrus는 자신의 인증확인에 대하여 보증(Warranty)을 한다. 또 매매당사자의 거래 은행이 실행한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과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증한다.
- ⑥ Identrus가 부여한 글로벌 ID에 대한 확인과 지급보증 확인이 끝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응답메시지를 송신한다.
- ⑦ 이 같은 보증의 확보를 통해 거래는 안전하게 진행된다.



〈그림 2〉 Identrus시스템을 통한 보증/보증 절차<sup>17)</sup>

17) [www.identrus.com/knowledge/pubs/Overview\\_Brochure.pdf](http://www.identrus.com/knowledge/pubs/Overview_Brochure.pdf)

### (3) “Eleanor”를 통한 決済

위의 거래절차에서는 신원확인과 신뢰확보에 대한 설명뿐 대금결제와 관련된 과정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Identrus가 개발한 결제 기능이 Eleanor이다.

Eleanor는 Identrus의 15개 가입은행<sup>18)</sup>이 참가하여 진행시킨 Project로서 당초 2002년 2사분기에 상용화할 것을 목표하였으나, 몇 가지 이유<sup>19)</sup>로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 Eleanor는 <표 1>과 같이 다양한 지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

지급형태	개요	전통적결제방식	취소가능여부	소유권의 양도가능성
Paymnet Order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은행에 지급지시	지로, 전신송금 등	Y	N
Payment Obligation	지정된 날짜에 소지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금상환의무 수락	약속어음, 환어음	N	Y
Certified Payment Obligation	매수인의 은행이 보증하는 대금상환의무 수락	은행인수어음, 배서된 약속어음, 지급보증	N	Y
Conditional Payment Obligation	최초 생성시 합의된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금상환의무 수락	에스크로우, 화환추심	N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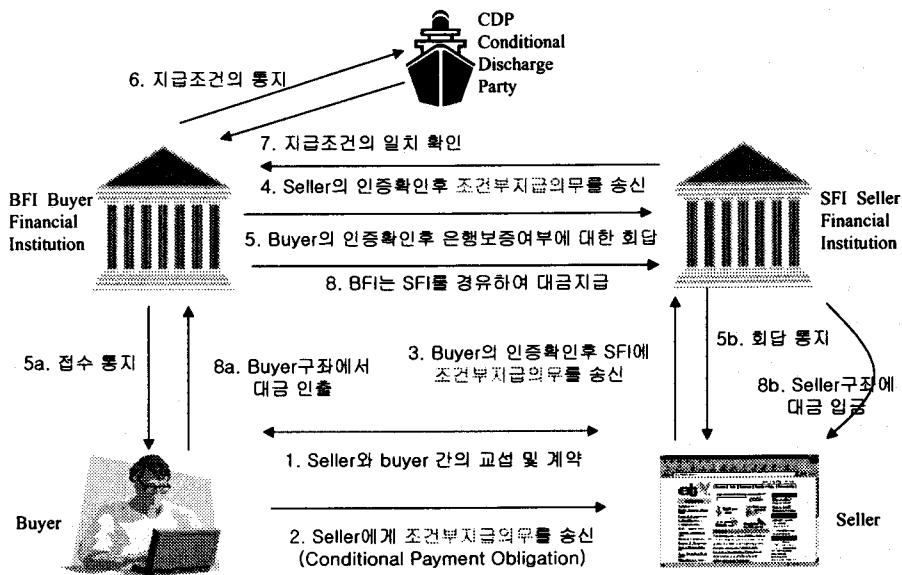
<표 1> Eleanor의 선택가능한 지급방법<sup>20)</sup>

18) HSBC ABN AMRO Bank, Australian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Barclays Bank PLC, BNP Paribas, Bank of Tokyo-Mitsubishi, Banco Santander Central Hispano,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HypoVereinsbank, Industrial Bank of Japan,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Royal Bank of Scotland/Natwest, Sanwa Bank, Societe Generale, Wells Fargo & Company ; [http://www.identrus.com/knowledge/pubs/Project\\_Eleanor\\_QA.rtf](http://www.identrus.com/knowledge/pubs/Project_Eleanor_QA.rtf)

19) 가장 주된 이유는 전자무역결제 관련 조직간의 제휴로 알려져 있다. 즉, Identrus와 SWIFT 및 BOELRO가 제휴를 통하여 기능의 중복을 막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BOLERO나 SWIFTNet 의 ePaymentPlus등이 Identrus의 인증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0) Identrus LLC, Project Eleanor White Paper V.1.01, 2002, p. 6에서 참조하여  
논자가 재구성

위 <표 1>과 같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Eleanor의 지급조건 중 가장 정교한 것으로 판단되는 “Conditional Payment Obligation”을 중심으로 거래절차를 도시하면 <그림 3>과 같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Identrus시스템을 통한 보증/보증 절차<sup>21)</sup>

-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성립시킨다.
- ②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 조건에 해당하는 의무(조건부 지급의무 ; Conditional Payment Obligation)를 통지한다. 이러한 의무는 화환신용장 혹은 화환추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매도인의 충실한 거래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 매도인은 매수인의 메시지를 수신한 후 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통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하며, 동시에 거래은행에 조건부지급의무를 송신한다. 이 조건부 지급의무에는 인도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④ 매도인의 거래은행은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조건부 지급의무를 매수인의 거래은행에 송신한다.
- ⑤a 매수인의 거래은행은 매수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매도인의 거래은행에 보

21) Identrus LLC, Project Eleanor White Paper V.1.01, 2002, p. 7에서 참조하여 논자가 재구성

증여부에 대한 회답을 해준다.

- ⑤b 매도인의 거래은행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답받은 보증여부를 매도인에게 회답해준다. (이하에서는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보증해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속 진행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조건부 지급보증을 받게 되었으므로 물품인도에 착수한다.
- ⑥ 매수인의 거래은행은 조건이행자(Condition Discharge Party; CDP)<sup>22)</sup>에게 지급조건을 통지한다.
- ⑦ CDP는 매수인의 거래은행에 조건부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조건의 일치를 확인해준다.
- ⑧a 매수인의 거래은행은 매수인의 구좌에서 거래 대금을 인출한다.
- ⑧ 매수인의 거래은행은 매도인의 거래은행을 경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 ⑧b 매도인의 거래은행은 매도인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시킨다.

이러한 거래절차를 통하여 매매당사자는 전통적인 종이서류 기반의 거래와 동일하게 은행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 3. Identrus의 特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dentrus는 종이서류 기반의 결제 방법 및 타 전자식 무역결제 방법과는 몇 가지 차이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하여 특징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銀行의 信用을 前提로 한 去來

Identrus는 전통적인 화환신용장이나 화환추심거래가 아니면서도 은행이 결제 거래상의 신용공여주체로서 신뢰성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은행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TradeCard나 은행의 역할에 전혀 변화가 없는 BOLERO의 SURF 등과 차이를 보인다.

즉, Identrus에서 은행은 신원확인을 위한 인증기관의 역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거래의 이행과 대금지급의 보증을 해주는 신용공여기관의 역할을 병

22) CDP는 운송인, 보험자 등 무역매매계약을 이행시키기 위한 의무의 이행자들을 의미한다.

행함으로써 당해 거래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더구나 이러한 거래가 온라인 상에서 계약체결단계 이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자무역업계에서 추구해오던 “단절없는 전자무역”의 구현에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 (2) 信用度 높은 企業間의 制限的 去來

Identrus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은행의 가입에서부터 상당한 수준의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Identrus의 글로벌 ID의 발급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특히 Identrus의 상용화 초기에는 이러한 방침이 고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철저한 신용조사를 거쳐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한해 글로벌 ID를 부여하고 이러한 ID의 보유자간에만 거래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사실상 무역거래의 대부분을 차지<sup>23)</sup>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거래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일반적으로 정보화에 따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실제 정보화의 정도도 높아 기술적으로 쉽게 Identrus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아울러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신용조사에도 불구하고 Identrus의 글로벌 ID를 부여받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Identrus의 의도대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 메郿프의 법칙에서 말하는 한계점을 넘을 정도로 가입하여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전자무역 결제의 새로운 유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는 높다고 생각된다.

### (3) 階層的 保證 構造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Identrus를 통한 거래에서 각 기업과 은행들은 자신의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예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즉, 개설은 행의 지급확약에 실질적인 뒷받침이 가능한 것이다.

Identrus는 거래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증금 예치

23) 2002년 12월 3일 한국무역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9009사 중 13사가 전체 수출실적의 총수출의 절반을 수출하였으며, 1억달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는 89개사로 전체의 0.3%이지만 수출실적은 64.4%를 차지한다고 한다. 무역일보 2002. 12. 4., p. 3

는 최종적으로 Identrus에게까지 적용되어 궁극적으로 거래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증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계층적 보증체계는 보험업계에서의 재보험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요컨대, 거래기업으로부터 Identrus에 이르기까지의 관련당사자들이 일정비율의 보증금을 부담함으로써 문제발생에 대비하는 방법은 거래에 응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하여 Identrus의 효용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 (4) 危險發生 最小化 및 簡明한 解決節次

Identrus는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원인증 약관 (Identrus Identity Certificate Policy ; IICP)과 유트리티 인증 약관(Identrus Utility Certificate Policy ; IUCP)이란 제도를 도입하였다. 두 약관 모두 Identrus시스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며 시스템에 가입한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한다. 상기의 두 약관은 BOLERO의 Rule Book과 마찬가지로 Identrus의 참여자로서 명한 모든 사용자를 구속하는 다자간 교환약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Identrus 글로벌 ID 보유자가 서로 거래를 할 때에는 비록 당사자간에는 첫 거래라 할지라도 새로운 교환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이 Identrus가 제공하는 두 약관에 규율되어 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Identrus와 가입은행간에는 “Member Agreement”를 통하여 그리고 가입은행과 기업간에는 “Customer Agreement(Terms and Conditions)”를 통하여 법적인 관계를 공고히 한다.

이와 같은 법적 안전장치와 전세계 금융기관들로부터 제공되는 Identrus보증서비스를 통해 Identrus는 위험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해결절차를 내부화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의도하고 있다.

### IV. Identrus를 통한 電子式 貿易決濟의 活性化 可能性

전자식 무역결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나아가 거래와 관련되는 위험을 축소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Identrus가 이러한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費用節減 可能性

비용과 관련하여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전자식 무역결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의 비용산출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전자식 무역결제만을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적기 때문에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마다 내부업무의 전자화 정도 및 기존 컴퓨터 시스템의 존재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자명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자식 무역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비용상의 이점을 기업규모나 전자화의 정도와 무관하게 크게 두 가지로만 검토하고자 한다. 즉,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다.

먼저 직접 비용은 전자식 무역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종전에 지출되던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새롭게 지출되는 비용을 상계하여 산출하게 된다. 예컨대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했던 경우라면, 수출상의 경우 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 환가료, 서류작성비용 등이 지출되지 않게 되며, Identrus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전자서명의 발급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sup>24)</sup>이 발생하며 아울러 보증금과 관련된 비용, Identrus관련 수수료<sup>25)</sup>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간접 비용은 Identrus를 활용하는 기업 내부의 정보화정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왕에 ERP<sup>26)</sup>, SCM<sup>27)</sup> 등이 구축되

24) 전자서명은 무역결제외의 다른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서명의 발급과 유지에 따른 비용을 모두 전자식 무역결제의 직접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음은 자명하므로 상세한 검토는 생략키로 한다.

25) Identrus의 수수료 정책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또 은행마다 차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공표된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이를 입수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실상 Identrus의 이점은 직접비용의 절감보다는 간접비용의 절감에 있다고 생각되어 수수료의 절대치를 중요한 변수로 다루지 않고자 한다.

26) 企業資源管理,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 경영에 있어서의 생산 관리, 판매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등 기업의 기본적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밀접하게 관련시켜 실행하는 것. 즉, 인력·생산재·물류·회계 등 기업의 모든 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최적화된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 <http://itdic.empas.com/view.tsp/?q=6257&s=1>

27) 供給沙蟲管理, supply chain management; SCM : 기업 간 또는 기업 내부에서 제품/부품의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 이르는 공급 체인을 재공학 및 동시 공학 기법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관리 기법. 공급 사슬 관리(SCM)는 제품 계획, 원재료 구매, 제조, 배달 등 공급망에 관련된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어 있는 상태라면 이와 연계하여 Identrus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보화의 정도가 낮다면 Identrus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요컨대, 비용절감 면에서는 Identrus를 도입하더라도 기업 내부사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본다.

## 2. 時間短縮 可能性

Identrus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역 결제와 관련된 거래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설정된 보증한도 내에서는 역시 합의된 조건만 일치한다면 컴퓨터의 연산과 처리에 의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동이 뒤따르는 운송에 있어서는 시간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운송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원거리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시간단축의 의미가 다소 퇴색할 여지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류의 취급과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의 검토, 대금지급과 관련된 업무절차를 전자화함에 의해 전체 거래 시간이 절감된다는 점에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 3. 危險低減 可能性

무역거래에 존재하는 위험 중 매매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이라 생각된다. 실상 내부거래가 아닌 경우라면 어떤 무역거래에서도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리라 본다.

Identrus 역시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없겠으나, Identrus를 통한 거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신용도가 높아서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이 비교적 낮은 기업간의 거래이며 이에 계층적인 보증이 부가되어 그 위험의 정도를 더욱 낮춘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낮추고자 노력했던 결제방식과는 달리 Identrus는 거래 자체의 편의성과 시간단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Identrus를 통한 거래는 다른 거래에 비하여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

; <http://itdic.empas.com/view.tsp/?q=5001&s=1>

#### 4. 效率性 提高 可能性

무역거래의 진정한 목표가 일국의 부를 증대시킴과 아울러 지구상에 부의 편재를 없게 하고 온 세계가 평등하게 부를 누리는 데 있다<sup>28)</sup>고 한다면, 이를 위하여 그 방법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무역관습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추구하여 이루어져 온 것이라는 점도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전자식 무역결제는 바로 이러한 무역관습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종이로 작성되던 신용장이 TELEX와 SWIFT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되고 전달되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좋은 예이다. Identrus 역시 다양한 전자식 무역결제 방법 중 하나로 기왕에 존재하던 종이서류 기반의 결제 방법이나 또는 다른 전자식 무역결제 방법이 지니지 않았던 신원인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즉, Identrus 그 자체로는 하나의 완성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전체 무역관습으로 본다면 좀더 효율적인 무역관습의 구현을 위해 진행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 Identrus가 무역거래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는지의 여부는 기능만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역거래에서 활용되어지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 V. 結論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은행들에 의해 설립되어 전자식 무역결제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전자서명의 인증기관임과 동시에 무역결제에 있어 핵심요소인 위험감소 기능 및 신용공여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전자식 무역결제 시스템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도입과 활용이 임박한 Identrus가 무역관습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 논자는 Identrus의 출현을 무역관습의 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한 현상으로 판단하여 비록 그 자체로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되, 전체 무역관습이 전자화의 물결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

28) 梁喨煥 · 吳元奭, 貿易商務論, 法文社, 2001. 1, p. 22.

최소한 기능상의 추가를 통하여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무역관습은 오랜 기간동안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리성의 추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온 것이며, 과거에도 컨테이너의 등장과 같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도 단기간에는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Identrus*를 포함하여 현재 구현되고 있거나 혹은 구현을 목표로 진행중인 수종의 전자식 무역결제방법 또한 이러한 합리성의 추구 및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며, 이들이 무역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역시 나름대로의 생략할 수 없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